# 부속서 1

**녹색기후기금(GCF) 환경사회 세이프가드(ESS) 및 정책과 일치하는 리스크 요인 사례**

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리스크 요인의 일부 사례를 다음의 목록에서 정리한다. 리스크 요인은 녹색기후기금의 잠정적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, 본 기금의 잠정적 환경사회 세이프가드, 환경사회정책, 젠더 정책, 원주민 정책의 요건을 고려한 것이다.

|  |
| --- |
| **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관리**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대기, 물 또는 기타 천연자원에 월경성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?  - |
| 본 사업활동은 누적영향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유관시설 및 제3자 영향이 수반할 것인가?  - |
| 본 사업활동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? |
| 인증기관, 실행기관 및 이행기관(양수인(grantee), 전차주(sub-borrower, 轉借主), 제안자(proponent))은 환경사회관리 계획 및 행동계획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?  - |
| **노동 및 근로 조건** |
| 본 사업활동은 특히 고용 관련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? 또한, 직접고용, 계약직 및 제3자 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무차별, 기회균등,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는가?  -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공급망 종사자 등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?  - |
| **자원 효율성 및 오염 방지**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물이 발생하고, 오염물질이 물과 토지로 방출되고,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, 유해물질을 사용하고,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, 그리고/또는 유해폐기물 등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인가?  - |
| 본 사업활동은 물과 에너지 등 천연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| 오염 저감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한 조치를 구축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는가?  - |
| **지역사회 보건, 안전 및 보안**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사업활동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사회의 보건 및 안전에 잠재적으로 리스크 및 영향이 미치게 되는가? 영향이라 함은 지역사회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생태계 서비스에의 영향 등을 포함한다.  -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성적 착취, 학대 및 희롱이 증가하게 되는가?  - |
| 사업활동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비상상황에서의 지원 방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비상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가?  - |
| 보안 대책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? 또한, 근로자 및 사업활동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사회 간 잠재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가?  - |
| **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**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토지수용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제도에 따른 강제절차로 인해 토지, 토지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수취할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기존의 토지 사용이 변경되고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생계수단 및 기타 경제활동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| **생물다양성 보존 및 천연생물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** |
| 본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변형, 천연 그리고/또는 중요 서식지, 또는 보호생태지역 혹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태지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
|  |
| --- |
| 본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침입 외래 생물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| 본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물다양성(특히, 멸종위기종 그리고/또는 위기종, 고유종 또는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생물종(restricted-range species),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성 또는 군집성 생물종(migratory or congregatory species))과 천연생물자원의 생산 등 생태계 서비스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| **원주민**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원주민 및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? 예를 들어, 토지 및 천연자원, 토지보유권 및 문화자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가?  - |
| 본 사업활동으로 인해 원주민의 물리적 퇴거(physical displacement) 그리고/또는 토지 및 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생계 수단 상실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?  - |
| 본 사업활동의 준비, 이행, 모니터링 및 평가 기간 동안 원주민과 기타 취약그룹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가?  - |
| 본 사업활동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(FPIC)를 득해야 하는가? 그러한 경우, 본 사업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(FPIC)를 득한 상태인가?  - |
| **문화유산** |
| 본 사업 또는 프로그램은 고고학적(선사시대), 고생물학적, 역사적, 문화적, 예술적 그리고 종교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또는 중요문화유산으로 간주되는 특징을 보유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되는가?  - |
| **환경사회 카테고리 분석 결과** |
| - |

